

광주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나550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나5509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4. 1 선고 2019가단53501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재영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훈, 신원진

변론종결 2021. 9. 29.

판결선고 2021. 11. 24.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4. 1. 선고 2019가단53501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 4. 10. 접수 제627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29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2.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셋째 줄 다음에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설사 피고가 C에 대하여 9,8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둘째 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를 “고지한 사실, 피고가 C에 2019. 4. 24. 1억 원, 2019. 4. 30. 7,2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제7호증)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인 2019. 4. 10.은 원고가

이미 C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C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는 날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2주일이나 지난 후인바,”를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운, 판사 정영하, 판사 황진희

1) 소의 변경이 교환적인지 또는 추가적인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할 것인데, 원고의 2021. 9. 16.자 청구취지및 원인변경은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원상회복의 방법만 변경하는 취지인데다가, 2021. 11. 17. 원고가 위 청구변경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위 청구변경은 추가적(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변경으로 본다(피고도 당심 변론 종결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이 사건의 경우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라고 밝히고 있다).